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제 금 융 기 구 에 의 가 입 조 치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,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국제통화기금의 한·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
- 나.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443만 3천365 특별인출권 출연
- 다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과건프로그램에의 19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
- 라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- 마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- 바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
- 사. 국제개발협회에의 5,284억 7,856만 원 출자 및 출연
- 아.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- 자.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1,123억 4,426만 304원 출자
- 차.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58억 9,787만 4,061원 출자
- 카. 아프리카개발은행에의 2,319만 계산단위 출자
- 타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- 파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- 하.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
- 거.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자
- 너.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1. 국제통화기금의 한·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
부터 제30호까지 외의 출연: 400만 미합중국달러

32.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출연: 443만 3천365 특별인출
권

제1조의2제2항에 제80호부터 제8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0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 · 제24
호 · 제30호 · 제35호 · 제41호 · 제46호 · 제51호 · 제56호 · 제62호 및
제72호 외의 출연: 190만 미합중국달러

81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 · 제36호 ·
제42호 · 제47호 · 제52호 · 제57호 · 제63호 및 제73호 외의 출연: 500만
미합중국달러

82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 · 제37호 · 제43호 ·
제48호 · 제53호 · 제58호 · 제64호 및 제74호 외의 출연: 1천400만 미합
중국달러

83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· 제55호 · 제60호 · 제66호 및 제76호 외의 출연: 80만 미합중국달러
제1조의2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국제금융협회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4호부터 제16회까지 외의 출자 및 출연 : 5,284억 7,856만 원 출자 및 출연

제1조의2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· 제8호 및 제9호 외의
출연 : 300만 미합중국 달러

제1조의2제6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출자 : 1,123억
4,426만 304원

18.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16호외의
출자 : 58억 9,787만 4,061원

제1조의2제7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제1호 · 제3호 · 제6호 · 제13호 및 제15호 외의
출자: 2,319만 계산단위

제1조의2제10항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· 제7호 · 제9호
· 제12호 · 제14호 · 제16호 · 제18호 · 제20호 · 제22호 · 제24호 · 제26호 및 제28호 외의 출연: 300만 미합중국달러

31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·제10호·제13호·제15호·제17호·제19호·제21호·제23호·제25호·제27호 및 제29호 외의 출연: 100만 미합중국달러

제1조의2제14항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다자투자기금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연: 300만 미합중국달러
제1조의2제16항 중 “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출자 : 4억5천만 미합중국달러(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,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)
2.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제1호 외의 출자 :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(4천50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,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)
3.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출연 : 119억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출자금 또는 출연금) ①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	①----- ----- -----.
1. ~ 30. (생 략)	1. ~ 3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1. <u>국제통화기금의 한·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외의 출연: 400만 미합중국달러</u>
<u><신 설></u>	32. <u>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의 출연: 443만 3천365 특별인출권</u>
②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 1. ~ 79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----- ----- -----. 1. ~ 79. (현행과 같음) 80. <u>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협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

1. ~ 17. (생략)

<신 설>

8호 · 제24호 · 제30호 · 제35호 · 제41호 · 제46호 · 제51호 · 제56호 · 제62호 및 제72호 외의 출연: 190만 미합중국달러

81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 · 제36호 · 제42호 · 제47호 · 제52호 · 제57호 · 제63호 및 제73호 외의 출연: 500만 미합중국달러

82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 · 제37호 · 제43호 · 제48호 · 제53호 · 제58호 · 제64호 및 제74호 외의 출연: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

83.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· 제55호 · 제60호 · 제66호 및 제76 외의 출연: 80만 미합중국달러

③-----

-----.

1. ~ 17. (현행과 같음)

18. 국제금융협회의 제1호부터

④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⑥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

1. ~ 1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8호까지,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4호부터 제16회까지 외의 출자 및 출연 : 5,284억 7,856만원

④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·제8호 및 제9호 외의 출연: 300만 미합중국달러

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

-----.

1. ~ 16. (현행과 같음)

17.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출자 : 1,123억 4,426만 304원 출자

18.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16호외의 출자 : 58억 9,787만 4,

⑦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

1. ~ 18. (생략)

<신설>

⑧·⑨ (생략)

⑩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

1. ~ 29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061원

⑦-----

-----.

1. ~ 18. (현행과 같음)

19.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제1호
· 제3호 · 제6호 · 제13호 및
제15호 외의 출자: 2,319만 계
산단위

⑧·⑨ (현행과 같음)

⑩-----

-----.

1. ~ 29. (현행과 같음)

30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
문협력기금에의 제6호 · 제7호
· 제9호 · 제12호 · 제14호 ·
제16호 · 제18호 · 제20호 · 제
22호 · 제24호 · 제26호 및 제2
8호 외의 출연: 300만 미합중
국달러

31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
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
호 · 제10호 · 제13호 · 제15호
· 제17호 · 제19호 · 제21호 ·
제23호 · 제25호 · 제27호 및

⑪ · ⑫ · ⑬(생략) ⑭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자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 <u><신설></u> ⑮ (생략)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<u>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한다.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<u>제29호 외의 출연: 100만 미합중국달러</u> ⑪ · ⑫ · ⑬ (현행과 같음) ⑭----- ----- ----- 3. <u>다자투자자기금에의 제1호 및 제2호외의 출연 : 300만 미합중국달러</u> ⑮ (현행과 같음) ⑯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.</u> 1. <u>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출자 : 4억5천만 미합중국달러(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,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)</u> 2. <u>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제1호외의 출자 :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(4천50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,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)</u> 3. <u>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·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출연 : 119억원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	
연 락 처	044-215-8725